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회계감독팀장 김 선 문 (02-2100-2684)	<b>담 당 자</b>	허남혁 주무관 (02-2100-2687)
	금감원 회계조사국장 정 규 성 (02-3145-7290)		이목희 팀장 (02-3145-7292)

## 제 목 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□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. 5. 22일 제10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메지온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의 조치를 하였음

□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6개사\*1, 내부회계관리자 2인\*2 및 5개\*3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(최대 1,500만원)를 부과하였음

- \*1 내부회계관리제도(규정, 조직)을 미구축
- \*2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
- \*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음

### ※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외감법 주요내용

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·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</li> <li>○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</li> </ul>
외부 감사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</li> </ul>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 변 인</b> prfsc@korea.kr	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(붙임)

**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**  
(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, 2019.5.22. 의결)

(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㈜메지온 결산기 : 2014.12.31.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: 의약 및 약학 연구 개발업</p>	<p><b>【회사】</b></p> <p>①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('14년 402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의료기기를 위탁판매하면서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 및 재고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수수료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</p> <p>판매금액(총액)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	<p><b>회 사 :</b></p> <p>- 과징금 24.3백만원</p> <p>- 감사인지정 1년</p>